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09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조승환 · 곽규택 · 김은혜
이종욱 · 김미애 · 배준영
김성원 · 권영진 · 김태호
서지영 · 정희용 · 김승수
정성국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기부자등이 기부채납한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 또는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에도 관리위탁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자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임

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후단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단서 중 “포괄승계인”을 “포괄승계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자등이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사실과 기부자등의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이를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그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에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실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종료일을 고지하고, 이를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7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자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다른 자에게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용허가) ① · ② (생략)	제20조(사용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 ----- ----- ----- ----- -----포괄승계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등”이라 한다)-----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자등이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사실과 기부자등의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이를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

⑤ (생략)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⑥ ~ ⑧ (생략)	<u>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u>이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그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에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실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종료일을 고지하고, 이를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u> <u>다.</u> ⑥ ~ ⑧ (현행과 같음)
--	--